
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

예금채권 집행 · 가상 작성례

채권자	[가상] 김가온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00
채무자	[가상] 이도윤 서울특별시 ○○구 △△로 00
제3채무자	[가상기관] 예시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○○구 금융로 00
집행권원	○○지방법원 2026가단00000 대여금 판결
청구금액	금 30,000,000원
피압류채권	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예금반환채권

신청취지

-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한다.
-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.

신청이유

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에 따른 금 30,000,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고자 합니다.

2026. 8. 10.

신청인 채권자 김가온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별지 1 · 청구채권의 표시

가상 작성례의 별지

집행권원	○○지방법원 2026가단00000 대여금 판결
원금	금 30,000,000원
지연손해금	이 공개 샘플에서는 계산 오류 방지를 위해 청구하지 않음
집행비용	이 공개 샘플에서는 청구금액에 산입하지 않음
합계	금 30,000,000원

실제 신청에서는 집행권원의 주문, 지연손해금 기산일·이율, 일부변제와 다른 집행절차의 회수액을 반영합니다. 여러 집행을 병행 하더라도 같은 채권을 중복 회수할 수 없습니다.

첨부서류

-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정본 1부
- 송달증명원 1부
- 제3채무자의 정확한 법인표시를 확인할 등기사항증명서 등
- 송달료·인지 등 접수 법원이 요구하는 납부자료

별지 2 · 압류할 채권의 표시

가상 작성례의 별지

채무자 이도윤이 제3채무자 예시은행 주식회사(실재하지 않는 가상기관)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30,000,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

- 예금계좌 000-0000-0000-00의 예금반환채권 (가상 계좌번호)
- 위 계좌로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법원 양식이 정한 예금종류와 압류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재
- 민사집행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·예금·급여 등은 제외

2026. 2. 1.부터 생계비계좌와 압류금지 예금·급여의 보호기준이 바뀌었습니다. 250만원 기준을 기계적으로 더하지 말고 다른 압류 금지 현금·예금과의 공제관계 및 신청일 기준 현행 법령을 확인합니다.

가상 작성 샘플